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95

제 출 일 : 2023. 10. 1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남양주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조)
-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다.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라. 남양주시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7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부서협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나.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 "지역 먹거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 3. "먹거리 종합 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른 남양주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 2.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3.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4.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남양주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1. 먹거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하다.
 -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2. 먹거리 관련 생산·가공·유통·소비·복지·환경·식생활 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0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농생명정책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팀장 직위·성명	농생명과학팀 윤규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신지혜 (031-590-455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9조 (위원회 운영)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상상 더 이상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생명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3A경기남양053)-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 농생명정책과-7148(2023, 6, 8,)호와 관련입니다.
-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의 성별영향 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2023A경기남양053) 1부. 끝.

甘 양 주 炒 融表

여성아동파장 이전훈 전쟁 2023. 6. 14. 여성정책팀장 **감양**녀 주무관 이연회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파-18552 (2023. 6. 14.) 접수 동생명정책과-7402 (2023. 6. 14.) 우 12284 경기도 남망주시 다산지급로18번길 95 (다산동) / http://www.nyi.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 / 박광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남양053					
정 책 명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부서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담당자명	신지혜	전화번호	031-590-45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6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생명정책과)	 ○ 제·개정 목적 - 남양주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개정 주요내용 - 먹거리 기본 조례 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조 및 제2조) - 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및 11조)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농생명정책과장 귀하

- 상상 더 이상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생명정책과장)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3-44)

동생명정책과-7145(2023.6.8.)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불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대경 2023. 6. 14. 감사관 청렴윤리팀장 신경주 주무관 감사팀장 김주현 박선영

협조자

시행 감사관-6818 접수 농생명정책과-7401 (2023. 6. 14.) (2023. 6.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급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1985 /sjn99006@kores.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 번호	2023-남양주-44					
자치 법 규 명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가담당 직급 및 성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농생명정책과		입안담당 직급 및 성		농업9급 신지혜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3. 6. 14.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련조문 검토		<u> </u> 과	조 치 사 항			
_		_			-	

2023년 6월 14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

농생명정책과장 귀하

- 상상 더 이상 남양주 -



남 양 주 VI.



수신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생명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정안)

-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7051(2023, 6, 7.)호와 관련됩니다.
- 2.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제정안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 비공개(5)

전쟁 2023. 6. 7. 적극행정팀장 남성명 주무관 법무담당관 不利力 김진배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921 (2023. 6. 7.) 접수 동생명정책과-7070 (2023. 6. 7.) 우 12232 경기도 남망주시 경춘로 1037, (급곡동) / https://www.nyi.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i1235@kores.kr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오늘과 내일을 앗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에고 결과 보고

- 1. 관련 : 농생명정책과-10443(2023. 8. 18.)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
- 2.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에고 조례, 제2조에 의거 입법에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제정 조례명 :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8. 24.(목) ~ 2023. 9. 13.(수)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인번에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농생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전걸 2023. 9. 14. 농생명과학팀 신지해 용규환 이현숙 박승복 잠 소장

협조자 법무행정팀장 조성관 법무담당관 김진배

시행 동생명정책과-11558 접수

우 12140 경기도 남양주시 집건읍 사용로 234-46, 2층 농입정책과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551 팩스번호 031-590-2579 / shinji1017@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